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21.05.25

개정 2022.01.0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에이치엘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권 한]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 제3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고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 성]

-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의 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써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종 류]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개최한다
3.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 집]

1.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24시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8조 [이사회의 성립]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9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법령 또는 이사회가 별도로 결의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제10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안건에 대한 결정
2. 대표이사의 선임
3. 합병, 영업 양도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4. 자본금의 증가, 감소, 신주의 발행과 배정 또는 실권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채권의 발행
6. 결산의 승인 및 잉여금의 처리
7.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출자 또는 지분 20%이상 취득
8.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대여, 차입 및 지급보증
9. 본점 이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및 자회사의 설립
10.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영업권 및 유형자산 이외의 기타자산 양수도
11.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토지, 건물 등 회사 유형자산의 취득, 처분 또는 양도
12. 아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1) 이사회 규정
 - (2) 감사업무처리 및 감사 규정
13. 회사 임직원의 타회사 임직원 겸직의 승인
14. 관계회사와의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로 자금의 대여, 보증 등의 거래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등
16.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결의하는 사항

제11조 [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사외이사 자문]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에 회사 내부 절차(업무협조조건 등)를 통하여 임직원이나 법률 고문, 경영자보상관련 컨설턴트 등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회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소요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8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